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

서울청량 많음!
서울교육 밝음!

2026년 경성고등학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2026. 8.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1. 감사배경 및 목적

- 2026년도 자체감사 계획(감사관-20883, 2025. 12. 31.)
- 2026년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추진계획(감사관-1535, 2026. 1. 30.)
- 2026년 상반기 사립학교(법인) 종합감사 실시 통보(감사관-2214, 2026. 2. 11.)
-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타당성 등 점검, 책무성 및 투명성 강화
-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대안 제시로 학교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2. 감사 대상기관 및 범위

- 감사 대상기관: 경성고등학교
- 감사범위: 2023. 3. 1. ~ 2026. 감사일 현재 기간 동안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 중점

- 학교회계(예·결산 및 세출)
-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학사(성적관리, 생활교육, 학교생활기록부)
- 교직원 인사관리(채용 전형,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계약(물품, 용역, 공사) 및 물품·재산관리
- 세입(전입금, 수익자부담수입 등), 세입·세출외현금
- 교직원 복무 관리
- 급여(시간외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 감사처분 시정 요구사항 이행 여부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2026. 5. 28.(목) ~ 5. 29.(금) [2일간]
- 감사인원: 감사단장 외 6명

5. 처분사항

- 단순·경미한 사안의 현지조치 외 처분내역 없음

[붙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 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경성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경성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소속 학생들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등 학교생활기록부 전반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¹⁾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과 학습 과정을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 중심의

1) 학교생활기록: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 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종합 기록이어야 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서술형 항목은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와 같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 중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학교생활기록의 기재내용 등) 제1항 제5호에서 ‘학생의 재학 중 이수 교과, 과목명, 평가 결과 및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매년 발행)에 따르면, 교과담당교사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학생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 근거하여 학생 개인의 성취과정과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작성하되, 수업에서 이루어진 활동의 단순 나열이나 이미 성취기준에 명시된 지식의 단순 서술은 지양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하면서 교사가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명료히 드러나도록 입력하지 않고, [표]와 같이 교사 ○○○이 ‘통합 사회2’ 과목을 수강한 1학년 학생 63명을 대상으로 동일·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일괄 기재하는 등, 교사 5명이 학생 총 163명에게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부적정하게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 2025학년도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복 기재 내역

담당	과목명	학년/학기	기재 대상	기재 내용
교사 ○○○	통합사회2	1학년 2학기	♣♣♣ 등 51명	분쟁 광물 채굴과 아동 노동 착취 등 세계화 시대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다국적 기업, 국가, 세계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함.
			♣♣♣ 등 12명	분쟁 광물 채굴과 아동 노동 착취로 인한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으로 다국적 기업, 국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을 설명함.
소계		63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2명~51명에게 중복 기재 ※ 1학년 수강 학생 175명 중 총 63명(36%)	
교사 ○○○	미술	2학년 2학기	♣♣♣ 등 30명	모자이크화, 영화 패러디 수업에 참여함.
		2학년 1학기	♣♣♣ 등 13명	음반표지 디자인, 북아트 수업에 참여함.
소계		43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3명~30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179명 중 총 43명(24%)	
교사 ○○○	미술 감상과 비평	3학년 1학기	♣♣♣ 등 14명	데미안 허스트의 설치미술작품을 보고 느낀 점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이야기함. 작품의 제목과 설명을 듣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작품을 비평적으로 감상함. 현수막으로 세상의 부조리를 알리는 동시대 작가의 작품을 보고 좋은 작품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작품을 감상함.
			♣♣♣ 등 12명	작품을 감상하고 비평함.
소계		26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2종을 학생 12명~14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207명 중 총 26명(13%)	
교사 ○○○	미술	2학년 2학기	♣♣♣ 등 21명	모자이크화 수업과 영화 패러디에 참여함.
소계		21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21명에게 중복 기재 ※ 2학년 수강 학생 104명 중 총 21명(20%)	
교사 ○○○	교육학	3학년 1학기	♣♣♣ 등 10명	'내 진로와 교육'을 주제로 글을 작성할 수 있음.
소계		10명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1종을 학생 10명에게 중복 기재 ※ 3학년 수강 학생 95명 중 총 10명(11%)	
총계		163명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시 평소 학생을 직접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특성이 드러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점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일련 번호
2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용역계약 보험료 사후정산 및 지출 부적정
 기 관 명 경성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경성고등학교에서는 학교시설의 야간·휴일 경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매년 당직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당직 용역 보험료 사후정산 미실시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제19장(국민건강 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 예규 제758호)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르면 용역계약 대금 지급시 용역대상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급여 충당금 등의 보험료는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세입 세출의 정의)에 따라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에서 2025학년도까지 당직 용역 계약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표 1]과 같이 보험료에 대한 실제 납부 금액 확인 및 정산²⁾을 실시하지 않고 계약 금액대로 지출하여 총 981,270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환수 과정에서도 [표 2]와 같이 당해연도가 아닌 2023년도 과다지급액은 2024학년도 교비회계에, 2024학년도 과다지급액은 2026학년도 교비회계에 세입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당직 용역비 당해연도 미정산 내역

(단위: 원)

구분		2023			2024			2025		
		계약(지출) 금액(A)	정산금액 ³⁾ (B)	차액 (C=A-B)	계약(지출) 금액(D)	정산금액 (E)	차액 (F=D-E)	계약(지출) 금액(G)	정산금액 (H)	차액 (I=G-H)
당직 용역	건강보험료	808,200	0	808,200	833,760	772,050	61,710	680,052	750,790	-70,738
	장기요양보험료	103,440	0	103,440	107,880	99,960	7,920	88,068	97,430	-9,362
	국민연금	0	0	0	0	0	-	-	-	0
	소계	911,640	0	911,640	941,640	872,010	69,630	768,120	848,220	-80,100
총 과다지급액		981,270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표 2] 당직 용역비 정산 부적정 내역

(단위: 원)

학년도	과다지급액	정산 내역			비고
		정산 일자	금액	정산 방식	
2023	911,640	2024. 3. 24.	911,640	2024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처리	2025학년도는 정산금액 없음
2024	69,630	2026. 3. 23.	69,630	2026학년도 교비회계 세입처리	
합계	981,270		981,270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2) 2022. 6. 8. ~ 6. 10. 실시한 경성고등학교 종합감사 시, ‘용역계약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미 실시’로 2019~2021학년도 과다지급한 보험료 금1,096,540원을 계약상대자로부터 회수조치 하도록 시정요구하였음에도 2026년 종합감사에서도 동일·유사한 사항이 재발되고 있다.

3) 업체에서 실제 납부한 금액

3. 당직용역 대가 지급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 미확인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증명서는 대금 지급일(입금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표 3]과 같이 매월 당직용역 대가를 지급하면서,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일 기준 유효기간 내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받아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 지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3] 당직 용역비 지출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미징구4) 내역

구분	건명	업체명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징구 여부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월	2월
2023	당직용역비	◇◇◇◇◇◇	○	X	X	X	X	X	X	X	X	X	X
2024			○	X	X	X	X	X	X	X	X	X	X
2025			○	X	X	X	X	X	X	X	X	X	X
2026			○	X	X	-	-	-	-	-	-	-	-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지출증빙서 확인

조치할 사항 경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용역계약 대금 지급 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를 정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 받아 납부 확인 및 유효 기간을 확인하는 등 용역계약대금 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4) 2026. 5. 감사일 현재 4대 사회보험을 완납했음을 업체로부터 확인함

일련 번호
3

서울특별시교육청

주 의 요 구

제 목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경성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경성고등학교에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 활동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예산 확정 후 세입·세출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의 장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 및 「사립학교 학교회계 예산 및 결산 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라 예산 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산편성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경비(전입금, 보조금, 지원금 등)가 교부되었으나 일정상

현실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운 경우에 별도의 예산심의 절차 없이 이사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하여 심의를 생략하고 학교장의 예산 확정 과정만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자체재원의 과목 조정 및 증감, 목적사업비 반납에 따른 해당 목적사업 예산액 감액 등은 할 수 없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기간 내(3월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에 예산 확정 처리 후 다음에 소집되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마지막 차수의 추가경정예산을 해당 학년도 2월에 편성하면서, [표]와 같이 목적지정 예산이 아닌 자체재원의 증감 사항 등이 포함된 예산 금△177,620천원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⁵⁾을 거치지 아니한 채 K-에듀파인 시스템상 예산 확정만으로 추가경정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한 사실이 있다.

[표] 2023~2025학년도 2차(마지막 회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내역

(단위: 건, 천원)

학년도	2차 추경 확정일	추경 내역				학운위 심의 여부 (사후보고일)	이사회 의결 여부 (사후보고일)
		(교육청 등) 목적지정 경비 교부		그 외 경비 금액조정 등 금액	총 금액		
		건수	금액				
2023	2024. 2.29.	10	121,146	-104,403	16,743	X (2024. 4. 3.)	X (2024. 5. 29.)
2024	2025. 2.27.	9	43,551	-88,681	-45,130	X (2025. 4. 9.)	X (2025. 5. 28.)
2025	2026. 2.26.	11	46,735	15,464	62,199	X (2026. 4. 7.)	X (2026. 5. 28.)
계		30	211,432	-177,620	33,812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및 업무관리시스템(K-에듀파인) 자료 재구성

5) 이후 학교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개최 시 사후보고 함

조치할 사항

경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고, 목적지정경비 간주처리 시 자체재원의 과목 조정 및 증감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학교회계 예산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경성학원 이사장은

이 건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업무 부적정

기 관 명 경성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경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과정 연계 체험활동을 위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실시하면서, 매년 위탁업체 선정 공고, 제안서 평가, 계약 체결 등 용역 업체 위탁 운영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및 「수련활동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에 따르면,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2단계 경쟁 입찰(가격-규격분리동시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고 수학여행 ·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활성화위원회 또는 제안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와 그 제안사항을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정량적

(객관적) 평가 분야와 정성적(주관적) 평가 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적 평가 분야는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수치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정량적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에 따라 학교의 장은 제53조 각호에 규정된 장부와 서류를 각각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장부 및 서류의 내용을 전산화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한 사항 중 장부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출력하여 이를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과 함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4~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면서, 2024학년도는 개인별 평가자료를 분실하여 평가위원별 정량 평가 및 정성평가 점수의 산정 근거와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또한, 2025~2026학년도는 정량 평가 사항을 계약담당자가 아닌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였으며, 업체에서 제출한 입찰 참가 신청서가 아닌 제안서 설명 책자에 기재된 내용으로 평가하였고,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입찰 공고 시 제시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기업신용평가등급 A-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이 아닌 임의의 평가 기준(B 이상일 경우 10점 만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 평가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2023~2026학년도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제안서 정량평가 부적정 내역

학년도	업체명	정량평가		평가점수(위원별)									비고
		배점	정당점수	1	2	3	4	5	6	7	8	9	
2024	♠♠♠♠♠♠	30	28.8	-									개인별 평가자료 분실로 확인 불가
	♠♠♠♠♠♠		27.8										
	♠♠♠♠♠♠		28.8										
	♠♠♠♠♠♠		25.8										
	♠♠♠♠♠♠		25.8										
	♠♠♠♠♠♠		27.8										
2025	◇◇◇◇◇◇	30	29.2	30	30	30	30	30	30	30	30		평가 기준 부적정
	◇◇◇◇◇◇		29	30	30	30	30	30	30	30	30		
	◇◇◇◇◇◇		28.8	30	30	30	30	30	30	30	30		
	◇◇◇◇◇◇		29	30	30	30	30	30	30	30	30		
2026	▲▲▲▲▲▲	30	27.8	30	30	30	30	30	30	30			평가 기준 부적정
	▲▲▲▲▲▲		28.8	30	30	30	30	30	30	30			
	▲▲▲▲▲▲		28.8	29	29	29	29	29	29	29			
	▲▲▲▲▲▲		27.8	30	30	30	30	30	30	30			
	▲▲▲▲▲▲		29	30	30	30	30	30	30	30			
	▲▲▲▲▲▲		29	30	30	30	30	30	30	30			
	▲▲▲▲▲▲		28.8	30	30	30	30	30	30	30			
	▲▲▲▲▲▲		28.8	30	30	30	30	30	30	30			
	▲▲▲▲▲▲		28.8	30	30	30	30	30	30	30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등 위탁업체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입찰 공고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정량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의 산정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평가표 등 제안서 평가 관련 증빙 서류 보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일련 번호
5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관 주 의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경성고등학교

내 용

1. 업무 개요

경성고등학교에서는 교비회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고 있다.

2. 원가통계비목 집행 부적정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사립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15조의2 (예산과목의 구분) 및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매년 발행)에 따라 사업 내용에 맞게 세출예산 과목을 구분하고 정당한 원가통계비목을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지출 시에는 내역에 맞는 예산 과목을 선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3월부터 2026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아래의 [표 1-1], [표 1-2] 과 같이 학생복지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거나 비품 구입비를 일반수용비나 교육운영비로, 업무추진비 성격의 협의회비를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등으로 집행하여 기준에 맞지 않는 원가통계비목으로 총105건, 금198,208,112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표 1-1]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유형별)

(단위: 건, 천원)

유형	지출 건명	지출 성격	원가통계비목		건수	금액
			정당과목	착오과목		
①	4월 아이스하키부 운영비 지급 (팀 단체복 구입) 외 4건	운동부 단체복 교과서	학생복지비	일반수용비	5	80,184
②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내부비품 구입비 지급 외 10건	비품	비품구입비	시설비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11	56,083
③	일반고교육역량강화 1,2학년 선택과목 및 전공설계 특강 자료 제작비 지급 외 23건	교육과정 지원 소모품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	24	51,362
④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수 다과비 외 62건	행사용 다과 교직원 식비	업무추진비 ⁶⁾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비 운영수당	63	8,393
⑤	학년 학생학부모 진학컨설팅 강사비 지급 외 7건	강사비	운영수당	일반수용비	2	2,186
총합계					105	198,208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1-2] 교비회계 원가통계비목 부적정 집행 내역(회계연도별)

(단위: 건, 천원)

회계 연도	유형별 건수 및 집행액										합계	
	①		②		③		④		⑤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3	1	6,294	2	4,530	9	22,540	38	4,666	2	2,186	52	40,216
2024	2	16,576	2	16,500	4	8,228	10	2,153	0	0	18	43,457
2025	1	52,614	5	26,056	8	14,419	15	1,574	0	0	29	94,663
2026	1	4,700	2	8,997	3	6,175	0	0	0	0	6	19,872
합계	5	80,184	11	56,083	24	51,362	63	8,393	2	2,186	105	198,208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6) 2022년 전차 종합감사에서 업무추진비성 경비 총39건(금7,852,560원)을 교육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

3.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명단 미첨부

가. 관계 법규 및 판단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교육부 예규),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서울특별시교육청, 매년 발행) 등의 규정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건당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성고등학교에서는 2023학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표 2]와 같이 건당 50만 원 이상의 협의회 총3건, 금4,624,000원에 대해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지 않았다.

[표 2] 2023학년도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시 명단 미첨부 내역

(단위: 원)

연번	학년도	결의일자	건명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금액	명단 첨부 여부
1	2023	2023.09.12.	2023학년도 상반기 정년 퇴임식 및 이임식 행사 식사비 지출	2,245,000	X
2	2023	2023.11.13.	제56주년 개교기념식 식비 지출	1,379,000	X
3	2023	2023.11.13.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 워크숍 비용 지출	1,000,000	X
합계				4,624,000	

※ 자료: 경성고등학교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경성고등학교장은

앞으로 「사립학교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지침」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과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편성 및 집행하고,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참석자 명단을 첨부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